

준비기간 ·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절차, 기준, 기간

1. 연장 절차

- ① 신청인이 연장 신청서(붙임2) 작성
- ② 준비기간이 만료되기 전(준비기간 연장 신청시) 또는 공사계획인가기간이 만료되기 전(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시)에 연장 신청서(붙임2)와 관련 증빙서류(2와 3. 참고)를 구비하여 전기위원회 사무국에 신청

※ 기간 만료 이후 신청 시 연장을 불허할 방침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접수 : 전기위원회 사무국 >

지 역	접수처	
	전화	이메일
서울, 경기북부, 인천	044-203-4591	okc597@korea.kr
경북, 강원	044-203-4592	jaclee10@korea.kr
전남(태양광)	044-203-4593	magnus76@korea.kr
광주	044-203-4594	erelea@korea.kr
경남, 부산, 울산, 충남	044-203-4595	asdf1241@korea.kr
경기남부	044-203-4597	greensky@korea.kr
충북, 전북	044-203-4598	yshoui@korea.kr
전남(태양광 外), 제주	044-203-4599	romaser@korea.kr
집단에너지, 구역전기(지역 무관)	044-203-4591	okc597@korea.kr

- ③ 전기위원회 심의 및 허가증 재발급

2. 준비기간 연장 기준 ※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기준 충족

연장 기준	신청서 외 추가 구비서류
①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	
②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	- 관련 허가증
③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, 전기판매사업자, 구역 전기사업자, 전력거래소 등과 전력 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*을 체결한 경우 ※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를 위한 장기계약을 포함	- 해당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하는 자료
④ 천재·지변·화재·기타 재해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된 경우	- 천재·지변·화재·기타 재해 발생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- 이 사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추진이 지연됐음을 입증하는 자료
⑤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	
⑥ 사업자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 접속에 지연이 발생하여 부득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경우	- 한국전력공사 의견서 (신청 이후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직접 문의)
⑦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자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	-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공문서 (신청 이후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직접 문의)
⑧ 개발행위 허가에 준하는 절차(가·나·다의 절차 등을 말한다)를 완료하였거나 완료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가. 「전원개발촉진법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나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 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	- 관련 허가증

3.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기준 ※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기준 충족

연장 기준	신청서 외 추가 구비서류
①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	
② 환경영향평가*의 완료 ※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포함	- 관련 허가증
③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, 전기판매사업자, 구역 전기사업자, 전력거래소 등과 전력 판매 등을 위한 장기계약*을 체결한 경우 ※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를 위한 장기계약을 포함	- 해당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하는 자료
④ 천재·지변·화재·기타 재해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된 경우	- 천재·지변·화재·기타 재해 발생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- 이 사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추진이 지연됐음을 입증하는 자료
⑤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	
⑥ 사업자의 재무능력이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(연장 신청일 당시 시행중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[별표1]을 기준으로 함)을 충족하고,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고, 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지연사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한 경우	- 자기자본은 투자확약서 또는 공동개발협약서 등 법적 구속력 있는 출자입증서류를, 타인자본은 대출의향서 등을 제출 (입증서류는 모두 연장되는 기간 내내 유효한 것만 인정) -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여 판단 (신청 이후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직접 문의) - 부지에 대한 소유권·사용권 확보는, 사유지는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

	<p>소유권자 동의서를 통해, 국·공유지는 관계기관 의향서(명시적 반대가 없는 유보적 또는 조건부 검토 의향도 인정)</p> <p>- 지연 사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사유서</p>
<p>⑦ 사업자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 접속에 지연이 발생하여 부득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경우</p>	<p>- 한국전력공사 의견서 (신청 이후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직접 문의)</p>
<p>⑧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자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</p>	<p>-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공문서 (신청 이후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직접 문의)</p>
<p>⑨ 환경영향평가 완료에 준하는 절차(가·나)의 절차 등을 말한다)를 완료하거나 개발행위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에 준하는 절차(다·라·마)의 절차 등을 말한다)를 완료하였거나 완료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</p> <p>가.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(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 한함)</p> <p>나.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해역이용협의(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 한함)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</p> <p>다. 「전원개발촉진법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</p> <p>라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</p> <p>마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 결정</p>	<p>- 관련 허가증</p>

4. 연장 기준 충족시 공사계획인가기간·준비기간 연장 기간

구 분	연장 요건 충족시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기간	연장 요건 충족시 준비기간 연장 기간
원자력·수력	2년 이내	6년 이내
석탄(50만kW ↓)	1년 이내	4년 이내
석탄(50만kW ↑)	1년 이내	5년 이내
천연가스(복합)	1년 이내	3년 이내
태양광	1년 이내	1년 이내
육상풍력	2년 이내	2년 이내
해상풍력	3년 이내	3년 이내
연료전지	1년 이내	2년 이내